



# 보도자료

정부혁신  
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1월 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제역방역과 과장 이제용(044-201-2531), 사무관 김영민(2539) / 제공일: 11월 4일(총 4매)

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겨울철 대비 전국 젖소농장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

- 전국 젖소농장 55백여호 대상 10월까지 36백여호 검사완료, 11월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나머지 19백호에 대해서도 농장채혈 검사 실시 -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 55백여호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을 검사하여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\*를 부과할 계획임

\*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500만원, 2회 750, 3회 1,000

- 11.1일부터 12.31일까지 소·돼지·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을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,
- 젖소의 경우 농가에서 유량감소 등을 염려하여 백신접종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,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화되는 문제가 있음
- 따라서, 젖소농가에 대해서는 사육농장에서 채혈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백신접종을 유도해 나갈 것임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11월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(5,533여호)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을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,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.1일부터 12.31일까지(2개월간) 소·돼지·염소 등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을 검사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나,
-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,
- 젖소농가에 대해 금년 9월까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을 검사한 결과,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, 한육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.
  - \* 소\*\* : ('18) 97.4% → ('19.1~9) 97.8
  - \*\* 한육우 : ('18) 97.5% → ('19.1~9) 97.9 / 젖소 : ('18) 96.8% → ('19.1~9) 97.3

□ 농식품부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5백여호의 65% 수준인 36백여호를 검사하였으며, 11월부터 연말까지 검사농가수를 13백호로 확대함으로써 ‘19년도 전국 젖소농장 검사농가수를 총 49백여호(전국 젖소농장의 90% 수준)까지 늘리고,

\* 소·염소 일제접종 관련 전국 항체검사 계획에 포함된 젖소농가수를 당초 500호에서 1,000호로 2배 확대, '19년도 안성 구제역발생(1.28) 젖소농장(1호) 및 '19년 NSP항체 검출농장(15호) 반경500m내 젖소농장(16호)에 대해서도 농장 채혈검사 실시

- '19년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6백여호(전국 젖소 농장의 10% 수준)는 '20년 1월 상순까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 젖소농장에 대해 농가당 연간 1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아울러, 금번 젖소농장 채혈 검사에서 **기준치**(구제역백신 항체양성을 80%) 미만으로 **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\***를 부과하게 된다.

\*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500만원, 2회 750, 3회 1,000

□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**특별방역대책 기간(10월~2월)**으로 설정하고,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
- 10.21일부터 11.20일까지(1개월간) 전국의 소·염소 사육농가(139천여호 4,334천여두)를 대상으로 **구제역백신 일제접종**을 실시하고 있고,

- 같은 기간, 전국 돼지 사육농가(63백여호)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**취약 농가\***(784여호 1,381천여두)를 선별하여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,

\* 올해 구제역 발생 시·군, 감염항체 검출 농장, 백신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농장, '16년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밀집단지 내 농장, 북한 접경지역 농장 등

- 11.1일부터 연말까지(2개월간)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**96백여호**(소 33, 돼지 63 등)에 대하여 **도축장 채혈**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을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.

□ 농식품부는 금번 겨울철에 대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조치들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확인·점검하고,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,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\* 농가에서는 구제역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, 정해진 용법·용량대로 정확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요망

#### ※ 구제역 긴급행동지침(SOP)

▶ (실처분 범위) 국내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(O형, A형)의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농장은 전체 우제류 사육가축에 대해 실처분, 동일 시·군 내 다른 농장에서 추가 발생 시에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만 실처분